

한국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의 발전과정에 관한 연구*

김두영* (단국대학교)

요약

이 연구는 한국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의 발전과정을 역사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외국의 장애인 평생교육 가치 및 지원체제와 비교하여 한국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의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를 위해 국가나 지자체가 발행한 문서, 관련 법령, 단행본, 보도자료, 논문, 협회 자료 등의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으며, 이론적 배경에서 미국, 호주, 일본 등 교육선진국의 장애인 평생교육 가치와 지원체제를 탐색했다. 국내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의 발전과정은 정책의 획기적인 변동 시기를 중심으로, 부제기(1998년), 도입기(1999년~2007년), 확대기(2008년~2015년), 도약기(2016년~현재)로 구분하여 각 시대별 한국의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과 현장의 실천 과정을 심층·분석하였다. 한국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논의한 결과, 장애인들이 일반 평생교육기관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정부 주도가 아닌 지역별 평생교육기관이 주도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운영 체제로의 전환, 장애인 평생교육을 권장하는 정부 부처의 일원화, 통합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확대 등이 필요하다.

주제어: 평생교육 정책, 장애인 평생교육,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 외국의 장애인 평생교육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세계보건기구(WHO)가 2001년 발표한 ICF(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Functioning, Disability and Health)를 계기로 장애의 개념은 신체적 장애에서 기능적 장애(Functional disability)로 무게중심을 이동하였고, 장애인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환경에 주목하기 시작하였

* 이 연구는 2022학년도 단국대학교 대학연구비 지원으로 연구되었음.

† 주저자: 김두영(16890),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로 152 단국대학교, kdy205@dankook.ac.kr

으며, 장애인에 장애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정책적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구체화했다(황수경, 2004). 이러한 장애의 개념 변화는 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토대를 마련했다(김두영, 조창민, 2021). 대부분의 나라가 일정 기간을 정해 놓고 공교육이라는 이름으로 국가나 지자체가 교육에 필요한 제반 시설이나 재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이러한 공교육 제도는 비장애인을 기준으로 설계해 놓은 제도이며, 장애인에게는 이러한 공교육 기간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장애인에 공교육 이후에도 평생교육 차원의 지속적인 교육이 절실히 필요함을 강조하기 시작했다(조창민, 김두영, 2016).

우리나라도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포럼을 개최하고 연구를 추진하는 등 학령기 장애학생에 국한되었던 특수교육 정책을 장애인에게까지 확대하기 시작했다. 일찍부터 지역사회 장애성인을 위한 교육공동체로 성장해 온 장애인야학 역시 2000년 이전까지 해도 전국에 9곳에 불과했으나 장애인 평생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제기되고, 「특수교육법」 개정과 함께 교육부, 교육청, 지자체 등의 정책적 지원이 늘어나면서 그 수도 급증하였다(김두영, 김미아, 2015). 이후 2016년 개정된 「평생교육법」은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내용을 대폭 삼입하면서 장애인 평생교육의 일대 변화를 예고했다. 「평생교육법」은 이후에도 2019년 4월 23일자로 제19조의3(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이 신설되어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는 장애인 인권에 관한 교육을 반드시 받도록 하였으며, 2021년 6월 8일자로 장애인 평생학습도시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시·군과 자치구, 특별자치시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를 지정,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교육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2021).

이처럼 오래 전부터 장애인 평생교육을 위한 정책과 실천적 노력이 있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나라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을 역사적 관점에서 조망한 연구는 찾아보기 쉽지 않다. 이에 이 연구는 국내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의 발전 과정을 시기별로 면밀히 살펴보고, 이를 소위 교육선진국의 장애인 평생교육 가치 및 지원체제와 비교하여 논의함으로써 우리나라 장애인 평생교육의 발전 과제를 도출해 내고자 한다.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이 시기별로 어떻게 수립되고 주요 특성은 무엇인가를 고찰하는 것은 이후 앞으로의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 발전과정을 예상하고 정책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수정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정책의 발전과정을 역동적으로 그려내는 것은 향후 정책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다시 설계하는데 다양한 도움을 줄 수 있고 특히, 정책 이행의 발전과정을 탐색하는 과정은 현실의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정책을 마련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신현석, 남미자, 이경옥, 2013). 교육 정책은 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 및 공공기관이 국민을 위해 다양한 대안 중 가장 적절한 방향을 선택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결정된 정책은 공

권력을 바탕으로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게 된다(이석진, 2005).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은 정부가 장애인 평생교육을 보는 관점과 정책 자원의 우선 투자결정, 정책담당조직의 강약,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집단의 참여 정도, 정책 자체의 오류 등에 의하여 변화된다. 이러한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의 발전과정을 역사적으로 기술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을 시대별로 구분하고, 각 시대별로 정책 내용을 선정하기 위한 자료의 수집 범위와 정리 방법에 대한 계획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이석진(2005)의 박사학위논문에서 특수교육 정책의 발전과정을 조망하기 위해 활용했던 시대 구분의 기준을 근거로, 국가나 공공단체가 공권력을 바탕으로 결정한 것인가라는 측면, 장애인 교육의 이념적 가치인 평등한 평생교육권 보장을 추구하고 있는가라는 측면,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이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왔는가라는 측면을 고려하여 1999년 이전까지를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의 ‘부제기’, 1999년부터 2007년까지를 ‘도입기’, 2008년부터 2015년까지를 ‘확대기’, 2016년 이후를 ‘도약기’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한편 국내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을 평가하는 척도가 되는 분석의 관점은 세계 여러 나라의 장애인 평생교육 이념과 지원체계를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이론적 배경에서 외국의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체계와 가치를 탐색하고, 우리나라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에 시사하는 바를 논의함으로써 향후 우리의 장애인 평생교육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2. 연구문제

이 연구는 장애인 우리나라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의 발전 과정에 관한 연구이다. 정책의 발전 과정에 관한 연구는 각 시기별 정책 내용이 무엇인가에 주목할 수도 있고, 정책 변화에 영향을 미친 변인과 이 같은 변인에 의해서 정책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밝히는 역동적 관점의 연구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양홍권, 2008). 그러나 이 연구는 우리나라의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밝히는데 초점을 두고, 이 같은 발전 과정은 어떤 배경 하에서 이루어졌는가를 밝히고자 한다. 그 중에서도 특히 각 시대별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의 주요 내용이 무엇인가에 초점을 두고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연구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제기(~1998년)의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과 현황은 어떠한가?

둘째, 도입기(1999년~2007년)의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과 현황은 어떠한가?

셋째, 확대기(2008년~2015년)의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과 현황은 어떠한가?

넷째, 도약기(2016년~현재)의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과 현황은 어떠한가?

II. 이론적 배경

1. 외국의 장애인 평생교육 가치

미국이나 독일, 영국, 호주, 일본 등 소위 교육선진국에서는 통합된 평생교육 환경을 강조하며, 별도의 장애인 평생교육 부서나 기관을 신설하기보다는 장애인 학습자가 일반 평생교육 환경에서 차별받지 않는 환경을 구성하는 것을 최우선 가치로 설정하고 다양한 장애인 평생교육을 추진하고 있다(정동영, 정동일, 정인숙, 2003; 정인숙 외, 2005). 물론 이들 국가에서도 발달장애인이나 중증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주간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직업재활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박미진 외, 2021), 기본적으로 장애인 학습자가 일반 평생교육 범위 안에 포함되어 차별 없이 일반 평생교육 정책 안에서 보호받고 있고, 평생교육 프로그램 역시 장애인 관련 시설이 아닌 일반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미국 장애인 평생교육 철학의 핵심은 ‘동등한 교육 기회에 의하여 장애인도 비장애인이 받을 수 있는 높은 수준의 성인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논리에 기초하여 통합된 환경을 강조하고 있다. 미국은 지역사회 내에 주민을 위한 회관을 설치하여 주민이 취미생활이나 자기 발전을 위해 계속교육을 받을 수 있는 강좌를 개설하고 있다. 예를 들면, 장애인은 저녁시간이나 주말을 이용하여 개설되는 스케치, 수채화, 등산, 소설, 컴퓨터, 스피치 등의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에 등록하여 비장애인과 함께 일상생활이나 취미생활에 필요한 내용의 교육을 받는다(정동영 외, 2003).

독일 역시 ‘장애인 학습자의 동등한 사회참여와 자기 결정적 삶 영위 및 특수한 욕구를 고려해야 한다.’는 철학적 논리를 근거로 평생교육 차원의 통합된 환경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이는 미국이나 독일만의 이야기가 아니며, 호주와 일본, 영국 등 소위 교육 선진국에서 공통으로 강조하는 것이다(김두영 외, 2019). 일본의 장애인 평생교육에서 지역의 공민관을 주요한 평생교육기관으로 활용하고 있는 바와 같이 그 정책은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박성숙, 2005). 이러한 지역사회 중심의 장애인 평생교육은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미국이나 독일 등과 같이 정상화 이념을 바탕으로 하는 사회통합의 이념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 일본의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은 다른 나라와 같이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해 그들의 직업능력을 회복하고 사회생활 능력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일본의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별도로

규정하는 내용보다는 일반 평생교육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으면서도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들의 사회생활 능력과 직업능력을 촉진하는데 중점을 두도록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송소현 외, 2011). 이처럼 대부분의 교육 선진국은 사회적 통합을 장애인 평생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이자 가치로 보고 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통합평생교육 환경 구축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두고 있다.

2. 외국의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체계

미국은 1976년 학습기회로부터 소외된 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의 일환으로 「평생교육법」(Lifelong Learning Act)을 제정하였다. 그리고 「재활법」(Rehabilitation Act, 1973)과 「미국 장애인법」(The American with Disability Act, 1990)에 근거하여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여 장애인 역시 평생교육의 대상임을 명확히 하였다. 특히 반차별 시민법인 「재활법」은 모든 사람은 장애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하며 특별 혜택이 아닌 일반적 접근 기회를 모두 공정하게 누릴 수 있도록 '적절한 조정(academic adjustment)'을 제공하여야 한다는 의무조항을 포함하고 있다(임은주, 최승숙, 2013). 이는 단순히 교육기회의 확대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의 장애유형별 특성과 장애 정도 등 개인별 특성에 따라 모든 교육기관에서 학습자에게 최적화된 교육 및 관련 지원을 제공해야 함을 의미한다(김주영 외, 2013).

미국의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체계 방식은 우리나라와 반대되는 수요자 중심의 상황식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미국 정부의 역할은 별도의 장애인 평생교육 부서나 기관을 신설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 학습자가 일반 평생교육 환경에서 차별받지 않는 환경을 구성하는 것이다. 이에 미국은 평생교육에 참여하고자 하는 장애인만을 위한 별도의 평생교육기관이나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보다는 지역 내에 주민을 위한 회관이나 지역사회 대학 및 4년제 대학 등 다양한 고등교육기관에서 통합된 환경에서 장애인에게 적합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제공하고 있다(Prince & Jenkins, 2005)

호주 역시 미국과 유사한 수요자 중심의 상황식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호주의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은 비 차별성과 포괄성을 강조하며 장애인 학습자들이 지역 내 일반 평생교육기관에서 자신이 희망하는 프로그램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통합적 평생교육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호주의 장애인 평생교육은 통합과 고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평생교육 정책은 적절한 서비스 제공에의 접근을 보장하는 것이며, 비장애인에 대한 정책과의 차별을 금지하고 가능한 동일한 방식으로 교육하되,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개인의 이익을 최대화하는 방향

으로 발전해 가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도 「사회교육법」을 통해 장애인 학습자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하며 별도의 장애인 평생교육기관이 아닌 일반 평생교육기관에서 장애인 학습자에 대한 지원 및 프로그램 참여를 관리하고 있다. 일본의 「사회교육법」은 제1조에 “학교교육법에 따라 학교의 교육과정으로 행해지는 교육활동을 제외하고, 주로 청소년 및 성인에 대해 행하는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사회교육이라 정의하고, 제3조에 “모든 국민이 모든 기회, 모든 장소를 이용하여 스스로 실생활에 부합하는 문화적 교양을 높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규정하여 장애인도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어야 함을 밝히고 있다(정인숙 외, 2005). 또한 2001년 21세기 특수교육의 방향성에 관한 조사연구협력자회의의 답신 “21세기 특수교육의 방향성에 대하여: 한 사람 한 사람의 요구에 따르는 특별한 지원의 이념에 대하여(최종보고)”에서는 장애를 가진 사람이 학교졸업 후 지역사회 속에서 자립하고 참여하기 위해서는 교육위원회가 복지관계 기관 및 복지단체 등과 협력함과 동시에 학교가 복지 등의 관계시설과 협력하여 전 생애에 걸친 학습기회의 충실을 도모하고, 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명기하며, 장애인의 학교졸업 후 평생교육에 관한 구체적인 방침을 최초로 제시하였다(박재국 외, 2013). 일본의 장애인 평생교육은 그 기관의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실천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장애인 평생교육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모든 평생교육에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장애인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개선·보완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와 같은 미국과 호주, 일본의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 지원체계는 장애인 학습자가 자신이 필요로 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수강할 수 있는 학습권과 선택권을 보장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학습자들이 평생교육기관에서 차별받지 않고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역할에 충실하고 있다.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은 민간기관에 일임하고 지역의 특수성과 참여 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 것이다.

Ⅲ. 연구방법

이 연구는 교육정책 분석의 질적 접근방법 중에서 역사적 접근방법을 적용하였으며, 제도·사적 측면을 위주로 접근하는 분석 방법을 사용하였다. 구체적인 시대 구분, 분석 내용, 자료 수집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시대 구분

교육정책에 관한 역사적 접근에 있어서 시대 구분의 문제가 제기되며, 특히 역사적 연구에서 시대 구분은 연구의 주제나 목적 등에 따라 달라지기 마련이다(이석진, 2005). 실제로 교육정책을 역사적으로 접근한 연구들(교육부, 1993; 양홍권, 2008; 이석진, 2005; 장길호, 2001; 최은수, 2008; 홍인혜, 2006)은 각각 다양하게 시대를 구분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석진(2005)의 박사학위논문에서 특수교육 정책의 발전과정을 분석하기 위해 사용했던 분석 기준을 토대로 시대를 구분하였다. 즉,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이 정부나 공공단체가 공헌력을 바탕으로 의도적으로 결정한 것인가,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이 과거와 비교하여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왔는가, 장애성인의 평생교육 보장해야 한다는 정책적 배려가 있었는가라는 측면에서 시대를 구분하고자 했다.

이러한 기준을 토대로 시대를 구분하기에 앞서 먼저 연구자가 그간 참여했던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연구과제 30여 편과 발표한 학술논문 70여 편을 탐독하면서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제도, 법령, 조례, 연구과제, 포럼, 사건 등을 시대 순으로 상세히 정리하였다. 이후 8차례에 걸쳐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가의 연구 모임에서 시대를 구분할 만한 쟁점 사항들을 추려내었다. 연구 모임에 참여한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가들은 현재 한국장애인평생교육연구소의 선임연구원이나 이사들로서 장애인 평생교육 전공 박사 3인과 특수교육 전공 교수 2인, 장애인 복지 전공 교수 1인이며, 이들은 연구자와 함께 2017년 이후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연구과제 및 학술논문 발표를 위한 연구 모임을 정기적으로 가져오고 있다. 8차례의 연구 모임 결과,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의 시대 구분의 쟁점이 될 만한 사건으로 1999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정책과제로 수행한 '성인 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 정책 및 프로그램 개발 기초 연구', 2007년 개정되고 2008년부터 시행에 들어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2016년 개정된 「평생교육법」이 채택되었다.

첫째, 1999년 교육인적자원부의 정책과제로 수행된 '성인 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 정책 및 프로그램 개발 기초 연구' 이전에는 시각장애 관련 칼럼에서 인안수 교수가 장애인 평생교육이라는 용어를 언급했을 뿐, 국가적인 차원에서 장애인 평생교육을 언급한 문헌을 찾아볼 수 없었다. 이 연구과제는 우리 사회에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고, 이전과 뚜렷한 변화가 있었다(김두영, 박원희, 김호연, 2013). 2001년 국립특수교육원에서 특수교육 정책 포럼의 주제로 장애인 평생교육을 다루었고, 2003년 이후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연구를 발주하기 시작했다. 2004년에는 단국대학교 특수교육과 박사과정에 장애인 평생교육·복지 전공과정이 신설되면서 장애인 평생교육의 필요성을 제기하거나 외국의 장애

인 평생교육 소개하는 논문들이 다수 발표되기 시작했다. 2000년까지만 하더라도 9곳에 불과했던 장애인야학은 그 수가 급증했으며, 2001년부터 교육부에서 추진한 '소외계층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사업'에서도 장애인 대상의 프로그램 지원을 점차 늘려갔다. 물론 국가 차원의 구체적인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을 마련했다고 볼 수는 없었으나, 1999년 교육인적자원부의 정책과제로 수행된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연구는 장애인 평생교육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제기함으로써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

둘째, 2007년에 법령과 내용이 전면 개정되고 2008년부터 시행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처음으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내 장애인 평생교육의 일대 전환을 가져왔다는 점에서 이전과 뚜렷한 변화가 있었다고 하겠다(김기룡, 2011). 개정법에 따라 2008년 발표된 「제3차 특수교육 발전 5개년 계획(2008년~2012년)」에서는 장애성인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확대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었고, 교육과학기술부는 2010년 「장애성인 평생교육 내실화 방안」을 발표하였으며,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에서도 장애인의 평생교육 기회 확대를 세부 추진과제로 다루는 등 구체적인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이 국가적 차원에서 거론되기 시작한 시기였다. 특히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4조(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로 인해 장애인야학은 제도권 안으로 들어와 합법적 지위를 부여받게 되었고, 민간 차원의 장애인 평생교육 실천들이 활성화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셋째, 2016년 장애인 평생교육의 일원화된 지원체제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된 「평생교육법」은 장애인 평생교육이 장애인과 관련된 법령에만 명시된 제한된 분야가 아닌 일반 평생교육 체계 내에서 존립하는 의미 있는 체계로서 그 위상을 높였다는 점(김기룡, 2016)에서 이전의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과 뚜렷한 변화가 있었다. 법 개정에 따라 교육부는 2018년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인력을 배치하였고,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을 발표하였으며, 국립특수교육원 내에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를 설치하여 장애인 평생교육 추진 체계를 마련하였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고, 장애인 평생교육 실태조사나 지원방안 연구를 추진하기 시작했으며, 이를 근거로 구체적인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이에 이 연구는 우리나라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의 시대를 다음과 같이 4단계로 구분하고 시대별 주요 내용을 탐색하고 심층·분석하고자 한다. 첫째,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장애인 평생교육이 철저히 외면당해 왔던 1999년 이전까지의 시기를 장애인 평생교육의 '부재기'로 설정한다. 둘째, 장애인 평생교육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국가 차원에서 제기하기 시작한 1999년부터 2007년까지를 장애인 평생교육의 '도입기'로 설정한다. 셋째, 장애성인을 위한 평생교육

지원을 법에 명시하고, 국가나 지자체 차원에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방안을 강구하기 시작한 2008년부터 2015년까지를 장애인 평생교육의 '확대기'로 설정한다. 넷째,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을 일반 평생교육 체계 내에서 추진하기 시작한 2016년 이후를 장애인 평생교육의 '도약기'로 설정한다.

2. 분석 내용 및 자료 수집

이 연구에서는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을 장애인 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대안 중에서 정부가 의도적으로 선택한 것으로써, 정부 및 공공단체가 장애성인을 위하여 평생교육과 관련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계획과 실천을 바탕으로 하여 공권력을 가지고 추진하고자 하는 행위와 그 결과로 정의하고자 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을 정부나 지자체 차원에서 장애인 평생교육 기회 확대 및 지원체제 마련을 위한 법규, 연구과제, 지원방안과 관련된 내용들을 분석하고자 하며, 아울러 그러한 정책 변화를 이끌었거나 결과로 나타난 여러 현장의 실천들을 시대별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과 결과들을 시대별로 분석하기 위하여 특수교육 및 평생교육 관련 법령과 조례, 국가나 지자체가 발행한 문서, 단행본, 보도자료, 일반 및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논문, 기사, 협회 자료 등 다양하고 폭넓게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노력했다. 구체적으로 관련 법규 정책을 분석하기 위해 「대한민국헌법」, 「교육기본법」, 「평생교육법」, 「평생교육법시행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등의 법령을 분석하였으며,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교육청의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조례를 분석하였다. 또한 정부가 발표한 '교육개혁방안', '특수교육 발전 계획',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시행계획',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추진계획', '평생교육백서', '특수교육백서', '특수교육 연차보고서'와 지자체의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계획',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기관에서 발행한 세미나 자료, 보도자료, 기타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논문 등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IV. 연구 결과

1. 부재기(~1998년)의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 및 현황

한국의 평생교육은 1973년 유네스코 한국위원회가 평생교육의 개념과 원리를 처음으로 소개한 후, 1980년 「대한민국헌법」에 국가가 평생교육을 진행하여야 한다고 명문화함으로써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교육과학기술부, 평생교육진흥원, 2008). 이후 1982년에 「사회교육법」을 제정하였고, 1999년에 「평생교육법」으로 법령과 내용을 전면 개정하였으며, 2007년에는 다시 「평생교육법」을 전면 개정하였다. 그동안 「평생교육법」은 한국 평생교육이 발전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국가 수준에서 실시하는 정책과 제도 또한 다양해졌고, 이로 인해 지역 문화센터 및 일반 시민단체에서도 평생교육이 활발하게 운영되었다(교육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2013).

이 시기 특수교육 분야도 빠른 속도로 성장했다. 1977년 12월 31일 특별법인 「특수교육진흥법」이 제정되면서 우리나라의 특수교육이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 이 법은 우리나라에서 특수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제정된 최초의 법으로, 이후 특수교육 정책 변천의 모체가 되었다. 「특수교육진흥법」은 특수교육기관에 취학하는 학생의 교육비와 교과용 도서를 무상으로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장학금, 학비감면 조치 등을 통해 취학기회를 확대하도록 규정하였다. 「특수교육진흥법」은 이후 1993년까지 두 차례에 걸쳐 개정을 한 후, 1994년 1월 7일 전문을 개정하였다. 개정법은 특수교육의 정의, 특수교육대상자 정의 및 선정 방법,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 및 교육적 조치, 순회교육, 개별화교육, 조기교육, 직업교육 등의 교육방법 확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취학편의 제공 등을 새롭게 개정되어 획기적인 변화가 있었다(이석진, 2005).

하지만 1990년대 말까지 우리나라 특수교육계에서는 고등학교 과정까지의 학교교육 제공에 총력을 다해온 터라 장애성인을 위한 평생교육을 거론할 만한 사회적 여건이 마련되지 못하였다(박승희, 2004). 1997년 발표된 '제1차 특수교육 발전 5개년 계획'(1997~2001) 역시 장애인에 관한 평생교육 정책을 명기하고 있지 않았으며, 주로 학령기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교육 수요를 반영한 교육 서비스 제공에 중점을 둔 계획으로 장애인 평생학습 개념이 적용되지 않은 계획이라고 할 수 있다(김두영 외, 2019). 이처럼 장애인에게 평생교육은 「대한민국헌법」과 「교육기본법」에 명시된 행복추구를 위한 기본적 권리이자 장애인의 삶의 전반에 걸쳐 자립생활 및 사회참여를 유도하는 기반이지만, 1990년대 말까지 장애인들은 장애를 이유로 국가로부터 철저하게 외면당해 왔으며 비장애인과 같은 수준의 기회와 권리를 누리지 못해 왔다(김호연 외, 2014). 다만 일반 평생교육도 그러했듯이 장애인 평생교육 역시 실천이 이론을 저만치 앞서 갔다. 일찍부터 장애인야학을 비롯하여 장애인복지관 등 장애인 복지시설, 종교단체, 대학동아리, 공부방, 사설교육기관 등에서 개인 또는 민간 차원의 장애인 평생교육 실천 운동을 전개해 왔다.

특히 장애인야학은 제도권 교육으로부터 가장 소외되어 온 장애성인을 위한 자생적 교육 기관으로서 공공육이 충분히 제공하지 못한 간극을 메우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해 왔다(김용욱, 하상근, 2009). 우리나라 최초의 장애인야학은 ‘미문야학’이라는 이름으로 1982년 문을 연 인천의 ‘작은자야학’이다. 이후 1993년 개교한 노들야학을 비롯하여 1990년 말까지 8개의 야학이 더 문을 열었다. 이 시기 장애인야학은 국가나 지자체의 지원 없이 심각한 운영난을 겪으면서도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많은 장애인에게 교육을 제공하여 검정고시 제도를 통해 학력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왔고, 대학 및 사회 진출을 통해 자아성취감과 삶의 질 향상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해 왔다(김두영, 박원희, 2014).

한편 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설립된 재활과 지역사회 교육을 주목적으로 하는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로서 1982년 최초의 장애인복지관이 설립된 이후 지역사회 장애인의 의료재활, 교육재활, 상담지도, 직업재활, 재가복지, 사회심리재활 등에 관련된 서비스를 생애주기별로 제공했다(박광욱 외, 2012).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크게 학교와 학교 밖으로 구분된다. 학교 밖 프로그램은 학령기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과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으로 나눌 수 있는데, 학교 밖 프로그램의 대부분이 장애인복지관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권경숙, 정영주, 2017). 하지만 이 시기 장애인복지관 역시 이용자의 대부분이 학령기 장애학생들이 차지하고 있어 성인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다소 미약했던 것이 사실이다(김두영 외, 2017).

2. 도입기(1999년~2007년)의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 및 현황

1990년대 말, 국내에 평생교육 개념이 부상하기 시작한 시점부터는 장애성인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정책에 관한 연구들이 간헐적, 산발적으로나마 나타나기 시작했다.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사회적, 학문적 관심을 불러일으킨 것은 1999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정책연구과제로 추진한 「성인 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 정책 및 프로그램 개발 기초 연구」이다. 이어 국립특수교육원에서 「2001 특수교육 정책 포럼: 장애인 평생교육 협력체제 구축방안」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하면서 장애인 평생교육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제기하는 연구들이 이어졌다. 국립특수교육에서 2003년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의 요구 분석을 통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방향 탐색 연구(정동영, 정동일, 정인숙, 2003)를 추진하였고, 2005년에는 장애인 평생교육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정인숙 외, 2005)를 추진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4년 장애인 교육권 보호·향상을 위한 3차 토론회를 개최하고, 장애인 평생교육의 쟁점과 대안(정동영, 2004)을 주요 주제로 다루었다. 2004년에는 단국대학교 특수교육과 박사과정에 「장애인평생교

육·복지’ 전공 과정이 개설되면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의 필요성을 제기하거나 외국의 장애인 평생교육 사례를 소개하는 논문들(박성숙, 2005; 박승희, 2004; 박원희, 2002; 정인숙, 2007 등)이 발표되기 시작했다.

교육부에서는 계층간·세대간·학력별 교육기회 격차의 문제를 개인과 시장에 맡기는 방관적 정책 또는 시혜적 지원 정책보다는 교육 소외계층의 요구 수용과 기본 역량 강화 방향으로의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경제적 이유 등으로 중·고등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근로자, 청소년, 성인, 출소자, 중도탈락자 등에게 중등교육기회 제공 등 사회적 통합증진을 위한 평생교육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교육인적자원부, 한국교육개발원, 2006). 이 중 ‘소외계층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사업’은 평생교육 참여 확대를 통하여 학력별, 연령별, 성별로 심화되는 평생교육 격차와 사회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 사업은 이러한 목적 하에 당시 교육인적자원부의 평생교육정책 사업의 일환으로 2001년에 시작되어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2001년 2억 원으로 20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을 시작으로 하여, 2005년에는 4억 9천만 원으로 102개 프로그램을 지원하였으며, 이후 예산이 계속 증가하여 2007년에는 9억 9천 4백만 원으로 184개의 프로그램을 지원하였다(박상욱 외, 2009). 2007년 본 사업에 선정된 184개 프로그램을 대상별로 살펴보면, 노인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 75개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다문화가정(36개), 장애인(31개), 저소득층(12개), 한부모(12개), 소외계층 일반(11개), 저학력층(5개), 외국인 근로자(2개) 순이었다. 장애인 대상 프로그램 수가 상대적으로 많아 보이나, 2005년 전국의 장애인 수가 215만여 명에 달하는 것을 감안해 보면(변용찬 외, 2006), 지원하는 프로그램 수가 턱없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게다가 이 사업은 기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비용을 지원하는 수준으로, 프로그램 분야도 ‘스스로 찾기’, ‘역량 갖추기’, ‘공동체 만들기’의 3가지 영역으로 구분하는 등 소외계층을 일반적인 평생학습자로 보기보다는 재활의 대상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로 인식하고 있어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2002년 수립한 ‘제1차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2002년~2006년)(교육인적자원부, 2002)은 「평생교육법」에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법적 근거 없이 국가 수준에서 마련한 평생교육 관련 중·장기 종합계획으로 평생학습 정책의 출발점이 되었다.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은 5년 동안 우리나라가 중점적으로 추진할 평생교육 정책에 대한 청사진으로, 평생교육 분야의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을 조금이나마 엿볼 수 있다. 제1차 기본계획에서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정책은 ‘취약계층을 위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 및 교육기회 확대’의 세부추진과제에 처음으로 포함되었다. 세부추진과제가 담은 주요 내용은 ‘취약계층인 여성, 중도 장애인 및 저소득층, 저학력층, 비문해자 등을 위한 평생교육 기회 확대 및 프로그램 발굴, 지

원'으로서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 기회 확대를 꾀하기 위한 정책이 제시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여성, 저소득층, 비문해자 등과의 이질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소외계층의 범주 안에 장애인을 포괄하였기에 대상의 특성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제3차 중심의 정책으로 볼 수 있으며, 특히 장애인의 생애단계별 교육적 요구를 구체적으로 담은 정책이라고 보기에는 미흡함과 한계가 분명하다.

한편 특수교육 분야에서는 모든 장애인의 생애단계별 교육기회 확대를 위해 장애인 평생교육, 특히 성인기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의 구체적인 계획들이 특수교육 발전 방안에도 포함되기 시작했다(김두영, 2013). 「제2차 특수교육 발전 5개년 계획(2003년~2007년)」(교육인적자원부, 2003)에서는 특수교육요구 학생의 다양한 고등교육 기회 제공의 필요성을 제기하였을 뿐 아니라, 장애성인 교육기회 확대가 정책의 한 내용으로 포함되었다. 즉, 특수교육 정책에서 장애학생의 중등교육 이후의 대학교육이나 그 외의 성인기 평생교육 기회 확대를 정책의 한 방향으로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2차 계획에 포함된 장애인 교육지원사업의 추진은 극히 미흡하였으며, 구체적인 시책은 2005년도 특수교육연계 개설행업으로 장애성인 야간학교에 9천만 원의 예산을 지원한 것이 전부였다. 이 사업은 정규교육을 받지 못한 장애성인의 문해교육과 검정고시 준비 등 학력 취득 기회 제공을 위해 운영하는 장애성인 야간학교 교육환경 개선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2005년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지원된 것이다(김정제 외, 2009). 「제2차 특수교육 발전 5개년 계획」의 추진 실적을 분석한 정동일(2006)은 다른 영역에 비해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실적이 매우 낮게 나타났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 시기는 장애인 평생교육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시기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정책이 마련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민간 차원에서 장애인야학이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외면당하던 장애성인을 위한 자생적인 교육기관으로서 공교육이 충분히 제공하지 못한 부족분을 채우는 역할을 해 왔다.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장애인야학의 수도 점차 늘어났고, 2004년에는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가 설립되어 장애인야학이 동아리 수준을 탈피해 지역사회 장애성인을 위한 교육공동체로 발전해 가고 있었다(천성호, 2009). 당시 진보적인 활동가들은 장애인야학이 그저 단순히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학교로서의 역할에 머물기를 원하지 않았다. 이들은 장애인야학이 지식 습득이나 기술을 배우는 것을 넘어 약자와 소수자를 배척하고 억압하는 사회와 맞서는 방법을 배우는 곳으로 여겼다(김용욱, 하상근, 2009). 당시 등록장애인 중 절반 이상이 초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을 소지할 만큼 교육에 있어서 심한 불이익을 받고 있던 장애성인을 위한 교육기관으로 출발한 장애인야학의 탄생과 전개 과정에 비추어 본다면 이러한 현상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라 하겠다. 교육

기회에 있어서의 차별을 없애고 장애성인들에게 주체적인 삶을 살게 하기 위한 장애인야학의 노력들은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관심을 이끌어내는 초석이 되었으며, 이후 2007년 개정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장애인 평생교육에 관한 조항이 삽입되는 성과로 이어졌다.

3. 확대기(2008년~2015년)의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 및 현황

동서를 막론하고 장애인의 교육권 확보를 위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모두 장애인 부모운동의 성과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장애인 부모운동은 '장애인의 가족, 특히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들이 중심이 되어 조직한 장애인의 사회운동'을 말한다. 장애인 부모운동은 장애인 자녀를 대변하는 간접적인 당사자 운동으로서 모성에 기초한 강력한 인권운동으로 성장하였고, 장애인과 관련한 중요한 법 제정과 제도 마련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1985년 국내에서 처음으로 '한국장애인부모회'가 만들어져 장애인과 가족의 문제를 공론화하기 시작했으나, 법 제정 등 분명한 정책목표를 가지고 사회운동 형태를 갖춘 조직적인 부모운동은 2000년대에 이르러 비로소 시작되었다(박인용, 2007). 2003년에는 여러 부모단체와 특수교사 단체, 장애인단체, 장애학생지원 단체 등 14개 단체들이 참여한 가운데 '장애인에게 교육은 생명이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장애인교육권연대를 출범시켰다. 이들은 20014년 특수교육 예산 확보, 특수교사 정원 확보, 성인 장애인 평생교육권 보장 등을 요구하며 국가인권위원회 접기능성을 필두로 2005년까지 9개 시도교육청을 상대로 농성을 전개하였다. 장애인교육권연대는 2005년 「특수교육진흥법」을 폐기하고 일명 '장애인교육법'을 제정하기 위한 운동을 전개하여 2007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을 제정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2008년 5월 법령과 내용이 전면 개정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법률 제8483호) 제33조와 제34조는 장애인 평생교육의 대상을 '학교교육을 받지 못한 장애성인'으로 제한하는 등 다소 아쉬운 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우리나라 장애인 평생교육의 일대 전환을 예고하는 획기적인 사건이었다. 개정법은 장애인에 대한 고등교육 및 평생교육 방안의 강구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로 규정하였다. 제33조(장애인 평생교육과정)에는 '각급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의 교육환경을 고려하여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의 계속교육을 위한 장애인 평생교육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고, 「평생교육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평생교육진흥원은 장애인의 평생교육 기회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하며, 「평생교육법」 제20조에 따라 설치 또는 지정된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은 「평생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이 장애인 평생교육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고

록 지원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또한 제34조(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설치)에서는 '국가 및 지자체가 초·중등교육을 받지 못한 장애성인을 위하여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여야 한다'고 강제하였다.

2008년 발표된 「제3차 특수교육 발전 5개년 계획(2008년~2012년)」에서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에 따라 장애인 평생교육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인식하고 학습기회를 놓친 성인 장애인들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지식을 학습할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하였다(교육과학기술부, 2008a). 이 계획의 장애인 교육지원 분야는 크게 두 가지로 제시되고 있다. 첫째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설치·운영에 대한 실태 파악 및 운영 지원을 통해 장애성인의 평생교육 기회를 확대하겠다는 것이고, 둘째는 장애인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발달장애 성인 교육기회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립특수교육원은 2008년에 고등평생교육팀을 신설하여 발달장애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 장애인 평생교육 유관기관 협의회 운영 등을 추진하였으며, 5개 대학 평생교육원을 선정하여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시범운영하고 모형을 개발할 수 있도록 운영비를 지원하였고, 장애인 평생교육 담당자를 대상으로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담당자 연수를 실시하였다(교육과학기술부, 2010).

이어 교육과학기술부(2010)는 「제3차 특수교육 발전 5개년 계획(2008년~2012년)」의 주요 과제로 지원하고 있는 '장애성인교육 지원 확대' 추진상황 점검에 따른 후속 조치로 2010년 9월 「장애성인 평생교육 내실화 방안」을 발표하고, 다양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을 제시하였다. 본 방안은 학력기 교육기회를 놓친 장애성인의 초·중등교육지원, 원격교육시스템을 활용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확대, 장애인 지원 평생교육 프로그램 확대, 평생교육 지원 확대를 위한 인프라 구축 등 4가지 분야의 11개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종합대책은 교육과학기술부가 장애성인을 위한 평생교육 분야를 본격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여졌다.

2013년 발표된 「제4차 특수교육 발전 5개년 계획(2013년~2017년)」에서는 평생교육시설의 프로그램 운영 확대 등 교육환경 개선을 통해 장애성인 평생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성인의 기초문화교육과 학력 취득의 기회 제공을 위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환경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시·도별 장애인 평생교육 발전계획 수립과 프로그램 개발·보급을 통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환경 마련, 다양한 장애성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으로 참여기회 확대, 시·도교육청 및 지자체간 장애성인 평생교육 협력 네트워크 강화 등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정책을 마련했다. 이러한 발전 계획에 따라 국립특수교육원

에서는 6개 영역별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대학 기반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시범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다. 또한 이 시기에는 국가와 지자체를 중심으로 장애성인의 평생교육 참여를 위한 요구를 파악하고 다양한 장애인 평생교육 모형을 개발하는 등 보다 구체적인 연구들(강순원 외, 2010; 박승철 외, 2010; 김윤태 외, 2009; 김정재 외, 2009; 김주영 외, 2013; 김호연 외, 2014; 송소현 외, 2011; 윤점룡 외, 2010)이 왕성하게 진행되었다.

2007년 「평생교육법」 전부 개정 이후 후속 계획으로 마련된 「제2차 평생교육진흥기본 계획(2008~2012년)(교육과학기술부, 2008b)」에서는 '사회통합을 위한 평생학습 관련 기관 참여 및 연계 확대'라는 정책 목표 추진을 위한 세부과제로 '저소득층, 장애인 등 소외계층 평생학습 기회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설정하였다. 이를 위해 첫째, 저소득층, 장애인 등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효율화를 위해 평생교육-고용-복지가 연계될 수 있도록 시·도평생교육원을 통합형 지원체제로 개선하는 계획과 둘째, 소외계층을 위한 평생학습 바우처 제도를 통해 평생교육의 참여율을 제고하는 계획, 셋째, 유관 부처·기관 간 연계를 통해 부처간 협력을 강화는 계획을 세부과제로 제시하였다.

「제3차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2013년~2017년)」은 '100세 시대 창조적 평생학습을 통한 국민행복 실현'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4개 분야의 정책목표와 12개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이 중에서 장애인 관련 정책은 '사회통합을 위한 맞춤형 평생학습 지원'의 정책목표에서 '사각 없는 소외계층 평생학습 지원'을 추진과제로 제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세부과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은 첫째, 장애성인 평생교육 지원환경 구축, 둘째, 장애성인 대상 문해교육 및 학력 취득 프로그램 참여 지원을 역점사업으로 포함하였다. 세부 추진 내용으로는 문해교육을 통한 학력인정, 방송중·고등학교에 장애성인 진입 경로 구축 및 지원, 장애성인의 교육 요구조사, 장애성인 교재교구 개발 및 보급, 장애인 대상 원격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장애인을 위한 기존 평생교육 콘텐츠 전환 등을 포함하였다. 제3차 기본계획은 정책의 중점 대상으로 장애인을 명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장애성인을 정책 대상으로 독립시켜 평생교육 지원 환경 구축과 문해교육의 대상자로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겠다.

한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문화예술교육으로부터 배제된 장애인들의 '문화 기본권' 보장을 위해 2007년부터 장애인복지시설에 문화예술교육 강사를 파견하는 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 사업은 2007년 무용 강사 파견에서 출발하여 2010년에는 음악, 2013년에는 미술과 영화, 2014년에는 국악과 연극 분야가 추가되어 현재 국악, 무용, 미술, 연극, 영화, 음악 등 6개 분야의 예술 강사를 파견하고 있으며, 학력기 이후 장애성인들이 전문적인 문화예술교육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되고 있어 현장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2007년 당시 장애인복지시설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에 참여한 시설은 20개 기관, 참여 장애인은 184명, 개설반 수

는 20개, 파견한 예술강사는 18명에 불과했으나, 2016년에는 참여 시설 250개 기관, 참여 장애인 3,611명, 개설반 수 402개, 파견 예술강사는 182명으로 눈부시게 증가하였다(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17).

이 시기에는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수나 장애성인 대상의 프로그램 수도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특히 장애인야학의 성장이 매우 두드러졌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4조(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그동안 민간기관으로서의 장애인야학은 법적 테두리 내에서 지역사회 장애인들을 위한 본격적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 지원의 장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김기룡, 2011). 2000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전국의 장애인야학은 9곳에 불과했다. 하지만 2000년대 이후 장애인 평생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의 장애인야학에 대한 지원이 조금씩 늘어나면서 2015년 당시 전국에 44개의 장애인야학에서 537명의 교사가 1,352명의 학습자를 지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교육부, 2016). 장애인야학은 대표적인 장애인 평생교육시설로서 공교육으로부터 소외된 장애성인을 위해 검정고시 교육은 물론 인문학 강좌, 문화예술교육, 시민강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 왔다(김두영, 박원희, 2013). 특수교육법 개정에 따라 국가적 차원의 지원도 계속해서 늘어났다. 특수교육연차보고서에 보고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실적을 살펴보면, 2008년 21개 장애성인 야학기관에 지원한 예산 2억9천7백만 원이었던 것이, 2010년 26개 장애성인 평생교육시설(야학)에 지원한 예산이 14억6천4백만 원으로 늘어났으며, 2021년에는 43개 장애성인 평생교육시설(야학)에 지원한 예산이 23억7천7백 만원으로 늘어났고, 2016년에는 49개 장애성인 평생교육시설(야학)에 25억2천7백만 원으로 상향되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 이후 이어져 온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은 장애성인 교육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산시키고, 미비하나마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장애인야학)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였으며, 정부와 지자체 차원에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여해 왔음에 틀림없다. 그러나 이 시기의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은 학교교육을 받지 못하고 학령기를 지난 장애성인을 중심으로 추진되어 왔으며, 학령기 교육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게다가 장애인 평생교육 전달체계 역시 국립특수교육원을 중심으로 한 기존의 특수교육지원 체계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4조는 교육대상자를 학령기 교육을 받지 못한 장애성인으로 한정하고 있어 학교교육을 제공받은 적이 있는 장애성인은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서 학습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논란의 소지가 있어 왔다. 또한 교육부 내의 평생

교육과와 특수교육과 사이에 장애인 평생교육을 놓고 묘한 신경전을 벌이기 일쑤였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에 따라 여러 장애인야학이 법적 요건을 갖추고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록을 신청했음에 불구하고, 지역교육청에서는 담당 부서가 없거나 관련 지침이나 서식이 없다는 이유로 등록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해 주지 않았다(전국장애인야학협회, 2009). 뿐만 아니라 정부의 장애인야학 지원 예산이 일반회계 내에 편성된 것이 아니라, 특별교부금 형태의 일회성 예산으로 편성되다 보니, 대부분의 운영비는 시·도교육청에서 책임져야 하는 구조였다. 이에 따라 자체 예산만으로 장애인야학을 지원하는데 소극적인 일부 시·도교육청 소속 장애인야학은 심각한 운영난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2014년 특수교육 연차보고서(교육부, 2014)에 따르면, 서울의 장애인야학 1곳에 지원된 예산이 22억 원인데 반해, 전라북도 지역의 장애인야학 6곳에 지원된 예산은 불과 4,700만 원에 불과했다. 이에 장애인야학 측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법령에 따라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운영 지원을 확대하고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해 왔다. 교육과학기술부(2010)가 제시한 '장애성인 평생교육 내실화 방안'은 이러한 장애인야학의 요구를 일부 반영하기도 하였으나, 구체적인 예산 지원 대책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 장애인야학으로부터 빈축을 사기도 했다(김기룡, 2011).

「제3차 특수교육 발전 5개년 계획(2008년~2012년)」과 「제4차 특수교육 발전 5개년 계획(2013년~2017년)」은 여전히 학령기 장애학생에 초점을 맞춘 계획으로 학습 기회를 놓친 성인들의 사회 적응과 대처를 위한 성인 평생교육 지원 기회 확대의 명시는 선연적 의미가 강했으며, 「제2차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2008~2012년)」과 「제3차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2013년~2017년)」에서 제시한 장애인 관련 평생교육 정책 역시 선연적 의미에 머물러 실효성을 거두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교육부, 2018).

4. 도약기(2016년~현재)의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 및 현황

2000년대 초반부터 2016년 「평생교육법」 부분개정 이전까지 약 15년간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정책은 여전히 걸음마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장애인야학 중 절반 이상이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로 등록하지 못해 운영비 등 예산 부족, 교육공간의 부족과 낙후된 교육환경의 문제, 교사 및 보조인력 수급의 어려움 등으로 심각한 운영난을 겪고 있었고, 고등학교를 졸업한 발달장애인의 계속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찾아보기 어려웠으며, 교육부 내에 평생교육과와 특수교육과 사이에는 묘한 칸막이가 자리하고 있어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은 담보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었다. 학문적으로는 장애인 평생교육 현황을 파악할 만한 데이터도 없고, 장애인 평생교육기관이나 프로그램에 대한 명석한 분석도 부족했으며, 참고할 만한 장애인 평생교육 조례안을 제시하지도 못했고,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 인력에 대한 논의도 부족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자신의 노후대책과 함께 자녀를 지속적으로 돌봐야 하는 부모의 보호부담이 계속 가중되면서 서비스 절벽에 따른 가족의 돌봄 부담이 사회문제로 대두되었고, 이는 결국 장애인 부모운동의 방향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요구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다.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대한 부모 및 장애인단체들의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먼저 몇몇 지자체에서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나섰다. 이어 장애인 부모단체를 비롯해 여러 장애인단체들은 특수교육이나 장애인복지 관련 법령이 아닌 「평생교육법」에 장애인 평생교육 기회 확대 및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조항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이에 장애인의 평생교육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하여 2015년 6월 30일 국가와 지자체의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책무를 규정하고 장애인 평생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의 「평생교육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었고, 지난한 과정을 거쳐 2016년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3조와 제34조의 규정을 폐지하고, 2016년 개정 「평생교육법」에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내용이 대거 포함되었다.

2016년 개정된 「평생교육법」은 일부 개정안이라고는 하나 내용과 폭을 볼 때,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내용을 대폭 삼입한 개정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김두영, 박미진, 정진숙, 2016). 개정 법률의 주요 골자를 살펴보면, 첫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둘째, 교육부장관이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장애인의 평생교육진흥계획 등을 함께 수립하도록 하는 한편 시·도평생교육협의회 및 시·군·자치구평생교육협의회의 위원에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하였다. 셋째, 장애인의 평생교육진흥과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장애인평생교육센터를 두도록 규정하고, 센터에서 수행할 업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넷째,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및 장애인 평생교육과정 부분을 「평생교육법」으로 이관하였다. 개정법의 시행으로 장애인의 평생교육에 대한 국가 차원의 책무성이 한층 강화되었으며, 장애인 평생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기관, 인력 및 프로그램 등이 확충되고 있다. 또한 일반 평생교육 체계 내에 장애인 평생교육이 포함됨으로써, 장애인 평생교육이 일반교육 환경 내에 주류화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고, 분리가 아닌 통합을 중심으로 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토대가 마련되었다.

「평생교육법」은 2016년 개정 이후 2019년과 2021년 두 차례에 걸쳐 추가 개정 작업이 이루어졌다. 먼저 2019년 개정 법률의 주요 골자는 2016년 개정된 「평생교육법」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의 임무, ②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의 인권 교육, ③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의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추가적으로 명시하였다. 2021년 개정 법률은 장애인 평생학습도시에 관한 규정을 신설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는 지난 2020년부터 장애인 평생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사업(국가 15억)’을 신설·운영하고 있다.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는 장애인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의 특성과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를 고려한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편의시설, 이동권, 접근성 확보 등 지역 장애인 평생교육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해 기획된 사업으로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된 지역은 장애인 평생학습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받게 된다. 2020년에는 광명, 오산, 부산, 군산, 청주 등 5개 도시가 선정된 바 있고, 2021년에는 당진시를 비롯하여 김포, 이천 등 15개 도시가 선정되었으며, 2022년에는 김포, 수원 등 계속지원 19개 도시, 춘천, 전주 등 신규지정 13개 도시가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었다. 개정법 제15조의2는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선정 및 운영 사업의 효율적 실천을 위해 제정되었다.

2018년에 발표된 「제5차 특수교육 발전 5개년 계획(2018년~2022년)」은 그간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특수교육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 17개 시·도의 장애학생 부모, 교원, 관련단체 등 특수교육 관계자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3대 목표, 4대 분야, 13개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하였다. 제5차 계획이 갖는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의 성과는 장애성인의 평생교육 지원 기반 구축을 위해 국가 차원에서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 계획을 수립하고,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설치와 운영을 통해 관계 부처(기관)간 유기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였다는 점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학령기 의무교육 단계에서 교육기회를 놓친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장애유형을 고려한 학력인정 맞춤형 교육시스템을 개발하여 국가 차원의 교육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5차 계획은 기존의 평생교육기관 및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평생교육시설의 장애인 평생교육 접근성 제고를 꾀했다는 점과 장애성인의 교육기관을 장애인 기관으로 제한하지 않고 일반 기관까지 확대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제5차 계획 또한 학령기 장애학생의 특수교육이 중점이 되는 계획으로 장애인 평생교육 기반 구축을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629개에서 1,130개로 확장)로 측정하는 것은 일반 평생교육의 양적 데이터로 볼 때 매우 미약한 접근이라 할 수 있다.

「제4차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2018년~2022년)」은 ‘개인과 사회가 함께 성장하는 지속 가능한 평생학습사회 실현’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4개의 추진전략, 4개의 대과제, 9개의 중과제, 19개의 소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이 중 장애인 평생교육과 관련된 내용은 ‘누구나 누리는

평생학습'이라는 대과제와 '소외계층 평생학습 사다리 마련'이라는 중점 과제에서 제시하고 있다. 두 번째 소과제인 '소외계층 실질적 평생학습 기회 확대'에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다루고 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평생교육 바우처 제공 등 교육비 경감, 장애인 평생교육 추진체계 구축, 장애인 맞춤형 평생교육 제공 강화를 제시하고 있다. 제4차 기본계획이 갖는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의 성과는 기존의 소외계층에 장애인을 포함한 것이 아니라 장애인을 중점 정책 대상으로 고려하여 진흥계획을 수립했다는 점으로, 국가의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의지를 강화했다고 볼 수 있다(김두영 외, 2019).

교육부도 장애인 평생교육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교육부는 2018년 1월 장애학생진로평생교육팀이라는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관련 인력을 배치하였으며, 3월에는 「국정과제(51-2. 사회 취약계층 교육지원 확대)」와 「제4차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2018년~2022년)」, 「제5차 특수교육 발전 5개년 계획(2018년~2022년)」 등을 근간으로 '2018년도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을 발표하였고, 4월에는 직속기관인 국립특수교육원 내에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를 설치하여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였다.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는 첫째,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 수립의 기초가 될 수 있는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둘째, 장애유형별 평생교육 프로그램과 교재·교구,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과 교육과정 등을 개발하고 있다. 셋째, 장애인 평생교육과 관련된 사람들의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해 그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 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넷째,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장애인의 평생교육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를 지정하여 운영하는 등 현장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다섯째,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을 위한 협의회와 세미나를 운영하고 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평생교육법」 개정 이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구체적인 프로그램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21년 10월 현재 17개의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전라북도(2015), 경기도(2016), 제주특별자치도(2016), 광주광역시(2016), 대전광역시(2016), 경상남도(2017), 경상북도(2019), 부산광역시(2018), 서울특별시(2018), 세종특별자치시(2020), 충청남도(2020), 인천광역시(2021) 등 12개 자치단체에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다. 광역자치단체의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조례는 지자체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첫째, 시·도지사에게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을 수립·시행할 책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둘째, 장애인 평생교육 시행 계획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장애인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한 사업간 조정

및 유관기관의 협력 증진을 위하여 별도의 장애인 평생교육 운영위원회 혹은 지원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셋째,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정·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해 예산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명소연, 한경근, 장철승, 2018). 또한 27개의 기초자치단체에서도 별도의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강원, 경기, 경남, 광주, 대전, 부산, 인천, 전남, 충북 등 10개의 광역자치단체 교육청에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관련 내용을 추진하고 있다. 10개 교육청 중 광주광역시 제외 9개 교육청의 지원조례는 장애인 평생교육기관이나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로서 장애인 평생교육을 추진하는 기관 및 시설의 활성화를 위한 것이다.

이러한 법적 근거를 기반으로 지자체별로 구체적인 장애인 평생교육 사업도 전개하고 있다. 대구광역시(2015), 경기도(2017), 세종특별자치시(2017), 광주광역시(2017), 인천광역시(2018), 제주특별자치시(2018), 서울특별시(2018), 충청남도(2020) 등에서는 장애인 평생교육 실태조사나 지원방안 연구를 통해 지자체 차원의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 최근에는 공주시와 당진시가 기초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방안 연구를 추진한 바 있다. 서울시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과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매년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컨설팅 지원 사업, 일반/장애인 평생교육기관 관계자를 대상으로 평생교육 전문성 강화 연수를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운영비와 평생교육사 1명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고, 2019년부터 장애유형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시범운영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외에도 여러 지자체에서 장애인 평생교육관계자나 강사들을 대상으로 장애인 교육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안산시, 오산시, 하남시, 의정부시, 전주시, 영월군, 공주시, 춘천시 등에서는 한국장애인평생교육연구소와 연계하여 '장애인평생교육강사' 양성과정을 운영하여 장애인 대상 전문 프로그램 강사를 양성하여 기관에 파견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평생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대부분이 비장애인 위주로 운영되고 있으며, 장애인의 접근성 확보 미흡으로 여전히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율은 저조하고, 프로그램의 다양성도 부족하며, 국가 단위의 장애인 평생교육 전담조직이 구성된 반면, 지역은 기존 평생교육 또는 장애인 업무 부서에서 장애인 평생교육을 담당하고 있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연계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등 장애인 평생교육의 체계적 관리 체계가 미흡한 수준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근거하여 교육부는 2019년 1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 방안(2020~2022)」을 발표하고 장애인이 평생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

다. 계획의 실현을 위하여 중앙정부에서는 교육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에서 범정부공동추진협의체를 구성하여 장애인 평생교육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과 예산 지원, 공동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시·도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는 평생교육기관, 장애인복지시설, 지자체 공단지사 등과 협력하여 장애인 평생교육협의회를 구성하고, 강사, 시설, 프로그램 등을 공유하는 한편,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운영하고 있다. 이처럼 정부는 시·도 지자체의 노력을 통해 장애인 맞춤형 평생교육을 적기에 적용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있다(교육부, 2019).

2016년 개정된 「평생교육법」은 장애인 평생교육이 장애인 관련 법령에만 명시된 제한된 분야가 아닌 일반 평생교육 체계 내에서 존립하는 의미 있는 체계로서 그 위상을 높였다는 측면에서 큰 의의를 지닌다(김기룡, 2016). 이로써 장애인 평생교육은 주변부가 아닌 일반 평생교육 체계 내에 포함되었고, 일반 평생교육 정책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하게 되었다. 법 시행 이후 한국의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은 이전 시기와는 달리, 보다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정책을 마련하고 장애인 평생교육의 지평을 넓혀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에 틀림없다. 하지만 아직까지 장애인 평생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여전히 많다. 무엇보다도 개정된 「평생교육법」의 내용 및 행정체계의 미흡으로 인해 현장에서도 혼선이 일어나고 있고,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를 국립특수교육원에 설치함으로써 장애인 평생교육 전달체계를 일원화하고자 했던 법 개정의 의도는 무색해졌으며, 센터의 평생교육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 현장의 공감대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많다. 이러한 가운데 한편에서는 별도의 「장애인 평생교육법」을 발의하는 등 아직 혼란의 여지는 여전히 있다. 이제 한국 장애인 평생교육의 새로운 지평을 열기 위해서는 각계 전문가와 실천가, 장애인 당사자와 부모 집단들이 머리를 맞대고 개선책을 논의할 때이다. 또한 지자체별로 현장에서 공감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효성이 높은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V. 결론 및 제언

이 연구는 한국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의 획기적인 변동 시기를 중심으로, 부제기(∼1998년), 도입기(1999년∼2007년), 확대기(2008년∼2015년), 도약기(2016년∼현재)로 구분하여 각

시대별 한국의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과 현장의 실천 과정을 심층·분석하였다. 이제 시대별 분석 내용을 정리하고 이론적 배경에서 살펴본 외국의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체계와 가치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의 나아갈 방향에 대하여 몇 가지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우리나라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의 '부제기'는 말 그대로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이 부재한 시기였다. 우리나라의 특수교육은 1977년 「특수교육진흥법」 제정과 이후 1994년 개정을 거치는 동안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특수교육 기회 확대를 비롯해 취학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일련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이석진, 2005). 하지만 1990년대 말까지 우리나라의 특수교육은 학령기 공교육을 제공하는 데 충실했을 뿐, 공교육 이후의 삶은 철저하게 외면했다. 국가가 제공하지 못한 장애인 교육은 장애인야학을 비롯하여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종교단체 등 민간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일반 평생교육도 그러했듯이 장애인 평생교육도 정책이나 이론이 실천을 안내했다기보다 실천이 앞서고 정책이 그 뒤를 쫓고 있는 모양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은 실천에 주목하지 않고 있다. 현재까지도 우리나라의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 지원체계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주도 하에 평생교육의 범위·대상·영역 등을 결정하고 일괄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운영하는 전형적인 국가 주도적인 하향식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는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현장의 실천 노력과 내용들을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둘째, 우리나라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의 '도입기'는 1999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정책과제로 추진한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연구 과제를 시발점으로 우리사회에 장애인 평생교육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제기하던 시기였다. 단순한 연구 과제로 치부할 수 있겠으나 국가적 차원에서 장애인 평생교육을 처음으로 언급했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으며, 그 영향력은 작지 않았다. 직속기관인 국립특수교육원에서는 곧바로 장애인 평생교육 주제로 포럼을 개최하였고, 이어서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연구 과제를 발주하기 시작했으며,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관련 토론회를 개최했다. 2004년 단국대학교 특수교육과 박사과정에 장애인 평생교육 전공과정이 개설되면서 장애인 평생교육의 필요성을 제기하거나 외국의 장애인 평생교육 사례를 소개하는 논문들이 발표되기 시작했다. 「제2차 특수교육 발전 5개년 계획(2003년∼2007년)」에서는 미흡하나마 학령기 이후 장애인의 대학교육이나 평생교육 기회 확대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었고, 교육부에서도 소외계층 평생교육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장애인 대상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사업을 확대해 갔다. 이러한 정책적 변화로 인해 2000년까지 9곳에 불과했던 장애인 야학은 그 수가 점차 늘어났으며, 2004년에는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를 설립하기에 이른다. 이에 장애인당사자나 장애인부모단체들이 장애인 대상의 평생교육 지원을 요구하며 거리로 나서기 시작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국가적인 차원의 관심과 정책 마련이 얼마나 파급력이 큰가

를 실감하게 한다.

셋째, 국내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을 ‘확대기’로 접어들게 한 것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개정·시행이다. 특히 개정법 제34조는 학교교육을 받지 못하고 학령기를 지난 장애성인을 위해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강제하였다. 장애인 평생교육의 대상은 학령기 교육을 받지 못한 장애성인으로 제한한 한계점을 분명 존재하지만, 장애인 평생교육의 지원을 명시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이후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과 실천에 많은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음은 분명하다. 이후 국립특수교육원은 고등평생교육팀을 신설하고 프로그램 개발, 유관기관 협의회 개최, 장애인 평생교육 담당자 연수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교육과학기술부는 2010년 「장애성인 평생교육 내실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장애인 평생교육이 국가의 주요 정책에 포함되었음을 표명했다. 「제4차 특수교육 발전 5개년 계획(2013년~2017년)」에서는 보다 다양하고 구체적인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사업을 구상하여 발표하였으며, 이 시기 국가와 지자체에서는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모형 개발과 정책 개발을 위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추진되었다. 특히 「제3차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2013년~2017년)」에서 장애성인을 별도의 정책 대상으로 독립시켜 지원책을 마련하는 등 일반 평생교육계의 관심도 높아지기 시작했다. 이 시기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은 여러 가지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주로 학교교육을 받지 못하고 학령기를 지난 장애성인을 주요 대상으로 한정함으로써 고등학교를 졸업한 장애성인의 평생교육 접근 기회를 제한했다는 점, 장애인 평생교육 전달체계를 국립특수교육원을 중심으로 한 기존의 특수교육 지원 체계를 고수했다는 점에서 여전히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넷째, 2016년 개정된 「평생교육법」을 계기로 시작된 우리나라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의 ‘도약기’는 일반 평생교육 체계 내에 장애인 평생교육이 포함됨으로써, 분리가 아닌 통합을 중심으로 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토대가 마련된 시기이다. 이후 국가나 지자체에서는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해 다양한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교육부는 전담부서와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를 설치하여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사업 등 적극적인 형태의 장애인 평생교육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별도의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사업,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 연수,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시범운영 사업 등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해 오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는 많다. 장애인 평생교육의 추진 체계를 일원화하기 위해 제정된 「평생교육법」의 의도와는 달리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가 국립특수교육원 내에 설치됨으로써 일선의 행

정체계에서는 혼선이 일어나고 있고, 장애인 평생교육 참여율은 여전히 3.2% 수준에 머물러 있다(국립특수교육원, 2020).

지금까지 살펴본 우리나라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의 발전과정과 외국의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체계 및 가치를 바탕으로 향후 우리나라의 장애인 평생교육 발전 과정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 평생교육 참여율 제고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학습자들이 모든 평생교육기관에서 스스로 희망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수강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힘써야 한다. 최근 지자체마다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나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확대해 가고 있으나 장애성인의 수요를 채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며, 그렇다고 계속해서 별도의 장애인 평생교육기관을 설립하는 것도 예산 상 가능성이 희박하다. 결국 장애인 평생교육 참여율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문화센터나 평생학습관에서 개설하는 프로그램에 장애인들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다. 이를 위해 물리적 환경이나 정보제공 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겠으나, 무엇보다 강사나 동료 학습자들의 장애인식 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 장애성인들 역시 장애인 평생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최우선 과제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꼽고 있다(김두영 외, 2017). 결국 국가나 지자체에서 장애인 평생교육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비장애인의 장애인식 개선 사업을 중요한 사업의 하나로 다룰 필요가 있다.

둘째,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을 민간기관에 일임하고 국가와 지자체는 이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에 힘써야 한다.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체계를 일반 평생교육 지원 체계 내에 포함시키기 위해 2016년 「평생교육법」을 개정했으나, 개정법의 의도와는 달리 우리나라의 장애인 평생교육은 여전히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및 지방자치단체별 평생교육진흥원을 통해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있으며,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별 장애인 평생교육기관을 지원·관리·감독하는 등 중앙집중식의 일률적인 수직적 체계의 구조를 띄고 있다. 이러한 하향식 방식의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 지원체계 방식은 학습자와 지역사회의 고유한 특성 및 요구를 반영하지 못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게 된다는 프로그램 개발상의 한계와 장애인 평생교육기관의 전문성과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게 된다는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국가나 지자체가 주도하여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장애인 평생교육기관을 관리·감독하기보다는 프로그램 개발·운영은 지역사회 장애인 평생교육기관에 일임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되, 이들이 평생교육기관으로서 정체성과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컨설팅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셋째, 우리나라의 장애인 평생교육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의 일원화가 요구된다. 현행 한국의 장애인 평생교육은 교육부가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평생교육의 전문성을 위해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가 주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정책을 관장하는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아닌 특수교육 관련 기관인 국립특수교육원에 소속되어 있다. 게다가 대부분의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장애인복지시설은 교육부가 아닌 보건복지부에 소속되어 있다. 결국 장애인 평생교육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 및 실행 기관의 상위 기관들이 이원화되어 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황으로 인해 장애인 평생교육의 환경은 통합된 환경을 지향하기보다는 일반 평생교육과 분리되어 장애인만을 위한 평생교육 정책을 수립하고 장애인만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철저하게 분리된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장애인 평생교육의 궁극적 가치인 환경의 통합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일반 평생교육과 장애인 평생교육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 및 지원 기관 등이 일원화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통합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유도하고 확대하기 위한 정책이 요구된다. 장애인들 중 상당수는 일반 평생교육기관에서 비장애인들과 함께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대구광역시 장애인 평생교육 실태조사(이정미, 배현숙, 2015)에서는 조사 대상의 35.9%가 문화센터를 이용하고 싶어 했고, 세종시 장애인 평생교육 실태조사(김학만 외, 2017)에서는 조사 대상의 22.2%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평생학습센터를 이용하고 싶어 했으며, 경기도 장애인 평생교육 실태조사(김두영 외, 2017)에서는 조사 대상의 37.7%가 비장애인과 함께 하는 평생교육기관을 이용하고 싶어 했다. 장애인 평생교육기관이나 장애인 스포츠센터 등 장애인을 위한 여가문화시설의 경우 대부분 평일 낮 시간대에 운영되므로 직장 다니거나 학업중인 장애성인이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매우 제한적이다. 또한 중증 장애인에 비해 경증 장애인이 대다수임을 고려해 볼 때, 많은 장애인들이 일반 평생교육기관에서 비장애인들과 함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장애인 학습자가 일반 평생교육기관을 이용할 경우 수강료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통합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강사에게 인센티브를 주고, 우수한 통합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시상하고 홍보하는 등 통합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강순원, 김윤태, 김정환, 박경석, 이미정(2010). **서울형 장애성인 평생교육 운영 모형 개발**. 서울특별시교육청.
- 교육과학기술부(2008a). **제3차 특수교육 발전 5개년 계획('08~'12)**. 교육과학기술부.
- 교육과학기술부(2008b).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2008-2012)**. 교육과학기술부.
- 교육과학기술부(2010). **장애성인 평생교육 활성화 방안**. 교육과학기술부.
- 교육과학기술부, 평생교육진흥원(2008). **2008 평생교육백서**. 교육과학기술부, 평생교육진흥원.
- 교육부(1993). **특수교육 백서**. 도서출판 특수교육
- 교육부(2014). **2014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교육부.
- 교육부(2016). **2016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교육부.
- 교육부(2018). **2018년도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시행 계획**. 교육부.
- 교육부(2019).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 방안('20~'22)**. 교육부.
- 교육부, 국가평생교육진흥원(2013). **2013 평생교육백서**. 교육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교육부, 국가평생교육진흥원(2021). **2020 평생교육백서**. 교육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교육인적자원부(2002). **평생학습진흥종합계획**. 교육인적자원부.
- 교육인적자원부(2003). **제2차 특수교육 발전 5개년 계획('03~'07)**. 교육인적자원부.
- 교육인적자원부, 한국교육개발원(2006). **2006 평생교육백서**. 교육인적자원부, 한국교육개발원.
- 곽승철, 임경원, 노진아, 이유리(2010).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 방안**. 충청남도교육청.
- 국립특수교육원(2020). **2020 장애인 평생교육 현황 조사**. 국립특수교육원.
- 권정숙, 정여주(2017). 장애성인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장애인복지관 사회복지사의 역량.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7(10), 513-520.
- 김기룡(2011).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발전방안.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발전방안 공청회 자료집**, 27-70.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 국회의원 안민석, 국회의원 이상민 의원실.
- 김기룡(2016).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제공인력의 배치와 교육. **한국장애인평생교육·복지학회 제2회 학술대회 자료집**, 99-120.
- 김두영(2013).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분류체계 연구. 박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 김두영, 강명희, 김호연, 박원희, 박애스더, 이경준, 이정미(2017). **경기도 장애인 평생교육 실태**

분석 및 정책방향 연구.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김두영, 김미아(2015). 장애인야학 교사의 직무만족도 분석.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17(1), 293-312.

김두영, 김호연, 신민선, 오은경, 이예다나, 조장민(2019). **서울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방안 연구**.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

김두영, 박미진, 정진숙(2016). 2016 「평생교육법」 개정에 따른 장애인 평생교육의 발전 과제. **장애인 고등교육 연구**, 2(2), 175-195.

김두영, 박원희(2013). 장애인야학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설정향성 분석.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제**, 14(4), 1-25.

김두영, 박원희(2014). 장애인야학의 운영 현황 및 발전 방안.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15(2), 311-339.

김두영, 박원희, 김호연(2013). 일반교육학 분야와 특수교육학 분야의 평생교육 연구 동향 분석. **특수교육학연구**, 47(4), 251-274.

김두영, 조장민(2021). **당진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방안 수립 연구**. 당진시

김용욱, 하상근(2009). 장애인야학의 전개와 운영상의 쟁점에 관한 문화기술적 사례 연구: 두 야학을 중심으로.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10(3), 159-186.

김윤태, 김성애, 박찬웅, 김윤덕, 김은주, 박용영, 김정숙, 김병철(2009). **전북지역 중증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연구**. 전라북도교육청.

김정재, 이상로, 송민경, 구미영, 도지영, 서은경, 최복천, 김기룡(2009). **경남지역 장애인 평생교육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경상남도교육정보연구원.

김주영, 김두영, 정희섭, 한경근, 홍석의(2013). **대학기반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모형 개발**. 평택: 국립한국복지대학교.

김학만, 천지은, 이주경, 김종숙(2017). **2017 세종시 장애인 평생학습 실태조사**. 세종특별자치시평생교육진흥원.

김정재, 이상로, 송민경, 구미영, 도지영, 서은경, 최복천, 김기룡(2009). **경상남도 장애인 평생교육 실태 및 지원 방안 연구**. 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

김호연, 김두영, 홍재영, 김해동(2014). **시각중복장애 학생 고등·평생교육 기반 구축 방안 연구**. 교육부.

명소연, 한경근, 장철승(2018). 지방자치단체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조례 분석 연구.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19(2), 1-24.

박광욱, 전주혜, 박용민, 정영주, 황주희, 박희찬(2012). 장애인복지관 직업재활서비스 원가분석

연구. **직업재활연구**, 22(2), 139-158.

박미진, 김기룡, 김재정, 주영하(2021). **해의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과정·프로그램 운영 사례집**. 아산: 국립특수교육원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박상욱, 유성상, 현영섭, 리상섭, 박소연(2009). 평생교육 정책 사업 성과분석 연구: 2009년도 소외계층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 사업을 중심으로. **평생교육·HRD 연구**, 6(3), 131-159.

박성숙(2005). 장애인의 평생교육 실태 및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강대학교.

박승희(2004).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의 발달장애인을 위한 성인교육 프로그램의 개관 및 효과. **특수교육학연구**, 39(1), 39-75.

박원희(2002). 중도·중복 장애인 여가활동 프로그램의 방향: 평생학습차원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박인용(2007). 한국사회 장애인 부모운동 연구: 장애인교육권연대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한신대학교.

박재국, 김혜리, 민영성, 이충렬, 박유정, 서보순, 김은라, 정인숙, 김석진(2013). **장애성인 평생교육 전문 인력 수급을 위한 법령 및 제도 개선 연구**. 국립특수교육원.

변용찬, 김성희, 윤상용, 최미영, 계훈방, 권선진, 이선우(2006). **2005년도 장애인 실태조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송소현, 김영미, 김영표, 나홍주, 박재국, 정해동(2011). **특수학교 기반 발달장애성인 평생교육 지원 모형 개발**. 국립특수교육원.

신현석, 남미자, 이경옥(2013). 다중흐름모형을 활용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의 정책변동분석: 법률 시행령 분석을 중심으로. **교육행정학연구**, 31(4), 199-225.

양홍권(2008). 개정 평생교육법의 의의와 개정 방향. **평생교육·HRD연구**, 6(1), 1-22.

윤점룡, 양종국, 원성욱, 강병호, 정인숙(2010). **성인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모형 연구**. 국립특수교육원.

이석진(2005). 한국 특수교육정책 발전과정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공주대학교.

이정미, 배현숙(2015). **대구시 장애인 평생학습 실태조사**. 대구평생교육진흥원.

임은주, 최승숙(2013). 발달장애학생의 대학기반 중등이후 교육 프로그램 실행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및 현황 분석. **지역장애연구**, 15(3), 263-285.

장길호(2001). 한국유아교육정책 발전과정 연구. 박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2009). 장애성인의 학교교육 실태와 개선 방안. **장애인 평생교육 실태 파악 및 개선방안마련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8-35.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안민석 의

원설.

- 정동영(2004). 장애인 평생교육: 장애성인 교육의 현황·과제 및 대책. **장애인교육권 보호·향상을 위한 3차 토론회 자료**, 43-68. 국가인권위원회.
- 정동영, 정동일, 정인숙(2003). **장애인 평생교육 실태 및 개선 방안 연구**. 국립특수교육원.
- 정동일(2006). 특수교육 정책 수립의 추진 과정과 실적 분석 -제2차 「특수교육 발전 종합계획(03~07)」을 중심으로-. **특수교육학연구**, 41(2), 267-296.
- 정인숙(2007). 미국장애인 평생교육기반과 시사점. **특수교육학연구**, 41(4), 174-193.
- 정인숙, 김현진, 김형일, 정동영, 정희섭(2005). **장애인 평생교육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안산 : 국립특수교육원.
- 조창빈, 김두영(2016).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이용 현황 및 요구 분석.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17(4), 1-24.
- 천성호(2009). **한국야학운동사**. 학이시습.
- 최은수(2008). 한국 평생교육정책의 추이와 정책과정 분석. **Andragogy Today**, 11(1), 219-254.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2017). **2016 복지기관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개선 방안 연구**.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 홍인혜(2006). 영·유아보육 및 유아교육 정책 변천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
- 황수경(2004). WHO의 새로운 국제장애분류(ICF)에 대한 이해와 기능적 장애 개념의 필요성. **노동정책연구**, 4(2), 127-148.
- Prince, D., & Jenkins, D.(2005). Building pathways to success for low-skill adult students: Lessons for community college policy and practice from a statewide longitudinal tracking study. *Community College Research Center* 25, 1-4.

· 논문 접수 2022. 07. 21 / 수정본 접수 09. 15 / 게재 승인 09. 26

· 김두영: 단국대학교 특수교육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에서 시각장애교육 전공으로 석사, 장애인 평생교육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주요 관심 분야는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인력 양성 등임.

Abstract

A Study on Lifelong Education Policy Development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South Korea

Kim, Doo Young (Dankook University)

The aim of this study is to analyze lifelong education policy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South Korea in a historical point of view, make comparisons with value and support systems related to lifelong education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foreign countries and ultimately seek ways to promote lifelong education policy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South Korea. In order to perform this study, a wide variety of data such as official documents issued by the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relevant provisions, publications, press releases, journals and papers issued by relevant organizations were collected and put into use for in-depth analysis. In theoretical background, the author assessed lifelong education support systems and its valu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the United States, Australia and Japan. By dividing up the domestic lifelong education policy developments into the age of absence (~1998), introduction (1999-2007), enlargement (2008-2015) and progress (2016 until present) mainly based on dramatic shift periods, the author closely analyzed the domestic lifelong education policy and practice in South Korea by the defined individual period. What has been discussed on the path forward for the domestic lifelong education policy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is that, it is necessary to create an environment where persons with disabilities are freely allowed to make use of ordinary lifelong education organizations. Also, it is important to make shifts to developing, distributing lifelong education programs not operated by the government, but by relevant local organizations. Lastly, reducing multiple institutions into a single governmental body tasked with lifelong education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expansion of integrated lifelong education programs are required.

* **Key words:** lifelong education policy, lifelong education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lifelong education policy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lifelong education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foreign countries